

영등포구의회  
제 1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15.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76호로 2015년 9월 1일 김길자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시간을 각 독서실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독서실 운영시간 변경(안 제5조제1항)

- 오전 08시 ~ 오후 11시로 한다. → 08:00 ~ 23:00까지 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나.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7조제5호) : 가정위탁 아동 감면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아동복지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2015. 8. 25 ~ 8. 31) : 의견 반영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에 대해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가정위탁 아동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현재 관내 청소년독서실은 15개소로서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독서실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루 평균 이용률<sup>1)</sup>이 42%로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률이 4%,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하루 평균 이용률이 15%인데 반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

---

1) 시설이용현황 4쪽 참조

- 독서실의 이용률 감소 요인으로 학교 내 독서실, 구립 정보 문화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대체시설 증가와 기존 독서실의 시설 노후화 및 부대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현 운영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독서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를 개선하고자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시간을 현재와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지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해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구립 독서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청소년 독서실이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건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기존 이용자에 대한 불편 사항과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한 기능전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참 고 자 료

## ■ 시설 및 이용 현황

- 청소년 독서실 운영시간 : 08시 ~ 23시
- 시설 및 이용인원현황 : 구민회관 등 14개소

(시설관리공단 제공)

(2015.6.30 기준)

구분	좌석 (수)	3개월 평균 이용자 현황					
		일평균		08~09시		22시~23시	
		이용자 (명)	이용률 (%)	이용자 (명)	이용률 (%)	이용자 (명)	이용률 (%)
계	1,306	545	42%	48	4%	191	15%
구민회관	154	102	66%	13.2	9%	29	19%
영등포본동	72	20	28%	1.2	2%	7	10%
영등포동	84	17	20%	1.5	2%	7	8%
도림1	42	15	36%	1.4	3%	7	16%
도림2	97	40	41%	2.5	3%	17	17%
양평3가	54	32	59%	2.6	5%	15	27%
양평2동	103	28	27%	1.6	2%	10	10%
신길3동	73	32	44%	3.0	4%	11	15%
신길4동	56	21	37%	1.9	3%	8	14%
신길5동	140	39	28%	2.0	1%	14	10%
신길6동	66	38	58%	3.6	6%	15	23%
신길7동	138	83	60%	9.7	7%	24	17%
대림1동	102	46	45%	2.5	2%	15	15%
대림2동	125	30	24%	1.9	1%	11	9%

## 관 련 법 령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